

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76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0. 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0. 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0. 25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사유

- 1997. 9. 25 조례 제1520호로 제정된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가 법령검토 미흡으로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기금운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 개정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금설치 (안 제2조)
-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(안 제3조)
- 기금의 용도는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, 고성군 노인회보발간,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,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, 대한노인회고성지회운영지원 등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운용 (안 제5조)
-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.(안 제6조)
-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(안 제11조)
- 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 (안 제13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안에 의거 기 제정된 고성군노인복지 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(97.9.25 조례 제1520호)중 기금조성 및 심의위원회 설치규정 등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고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러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본 조례안의 전면 개정이유는
- 답 :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령과 상충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 개정
- 문 :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의 규모는
- 답 : 3년간 매년 6,000만원 조성되었으며, 향후 2001년까지 적립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0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